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섭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표창의 종류별 명칭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 행정적 명칭을 삭제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개선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표창장의 종류 중 사용하지 않는 전공표창장·공로표창장 및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하는 용어를 삭제(제2조)

나. 표창의 종류별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명칭으로 개선(제3·4·8·9·10·18·23·24조)

- 공적상 ⇨ 표창장, 우등상 ⇨ 상장, 협조상 ⇨ 감사장

다. 부대개편 이후 사용하지 않는 육군 ‘야전군사령부’ 명칭 삭제(제5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, 신구조문대비표

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“「군표창규정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공적상(이하 “공적상”이라 한다)의 표창장은 전공표창장·공로표창장 및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한다.”를 삭제한다.

제3조 중 “영 제4조에 따른 우등상 (이하 “우등상”이라 한다)의 상장은”을 “영 제4조에 따른 상장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공적상의 표창장,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(이하 “협조상”이라 한다)의 감사장의 서식은”을 “표창장,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감사장의 서식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다목 중 “(육군의 경우 야전군사령부 및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)”를 “(육군의 경우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8조 제목 “(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)”을 “(표창장의 추천대상자의 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”를 “표창장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“(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)”을 “(상장의 추천대상자의

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”를 “상장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”로 한다.

제10조 제목 “(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)”을 “(감사장의 추천대상자의 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”를 “감사장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”로 한다.

제18조 제목 “(우등상의 수여구분)”을 “(상장의 수여구분)”으로 한다.

제23조 중 “그 공적상의 표창장,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”를 “그 표창장,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공적상의 표창장,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”를 “표창장, 상장 및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 (표창장) 「군표창규정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공적상(이하 "공적상"이라 한다)의 표창장은 전공표창장 · 공로표창장 및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한다. 제3조 (상장) <u>영 제4조에 따른 우등상 (이하 "우등상"이라 한다)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.</u> 제4조 (서식) <u>① 공적상의 표창장,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(이하 "협조상"이라 한다)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.</u> 제5조 (표창권자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. ~ 나. (생략) 다. 각군 본부의 참모부장 · 실장 · 단장 및 병과장(<u>육군의 경우 야전군 사령부 및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</u>)	〈삭제〉 제3조 (상장) <u>영 제4조에 따른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.</u> 제4조 (서식) <u>① 표창장,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.</u> 제5조 (표창권자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각군 본부의 참모부장 · 실장 · 단장 및 병과장(<u>육군의 경우 작전 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</u>)

현행	개정안
제8조 (<u>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</u>) <u>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</u> 1. ~ 7. (생략)	제8조 (<u>표창장의 추천대상자의 기준</u>) <u>표창장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1. ~ 7. (현행과 같음)
제9조 (<u>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</u>) <u>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1. ~ 4. (생략)	제9조 (<u>상장의 추천대상자의 기준</u>) <u>상장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0조 (<u>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</u>) <u>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1. ~ 2. (생략)	제10조 (<u>감사장의 추천대상자의 기준</u>) <u>감사장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1. ~ 2. (현행과 같음)
제18조 (<u>우등상의 수여구분</u>)	제18조 (<u>상장의 수여구분</u>)
제23조 (직접수여)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<u>그 공적상의 표창장,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.</u>	제23조 (직접수여)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<u>그 표창장,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.</u>
제24조 (수여사실 증명) ① <u>공적상의 표창장,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.</u>	제24조 (수여사실 증명) ① <u>표창장, 상장 및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병영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54